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 기반시설 조성사업 외 1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 계약원가심사분야 특정감사 -

▶▶시 ㉹㉹㉹㉹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기반 시설 조성사업 외 1건” 을 추진하였다.

[표 1] 공사현황 “생략”

### 1. 설계변경 심사 미이행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공사는 건설표준 품셈, 각종 제시방서, 현지어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 하여야 하며, 적절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2026.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제2절에 의하면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시·군 계약심사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 ■■■■■과에서는 “○○ ○○○○○○○○○○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1건”에 대해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으로 10% 이상 증액이 발생하면 계약심사부서에 설계변경심사의 적절성 및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 ○○○○○○○○○○ 기반시설 조성사업**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으로 누적 증감비율이 아래의 [표 2]과 같이 2회 설계변경 시 10% 이상 증가 되어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 후 변경 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설계변경 계약 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표 2] 설계변경 내역 “생략”**

**나. ■■■■■ 조성사업**

또한 “■■■■■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으로 누적 증감비율이 아래의 [표 3]과 같이 4회 설계변경 시 10% 이상 증가 되어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 후 변경 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않은 채 설계변경 계약 후 공사를 준공하였다.

**[표 3] 설계변경 내역 “생략”**

그 결과, 계약금액 산정의 합리성과 원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없어 예산 집행의 타당성이 저해되고, 그로 인해 행정적·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설계변경 등 공사관리 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계상 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시 ■■■■■과에서는 “○○ ○○○○○○○○○○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① 골재치환·쇄골재 부설 시공 시 다짐 작업 미시행 ② 골재치환 등

현장유용 물량을 사토물량에서 미제외 ③ 암발파에서 대형브레이커로 변경 시행했으나 미감액 조치 ④ 사토운반 단가 산정 부적정 등 총 약 33,460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공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다 계상된 사업비 33,460,000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건축물 건축사업 설계변경 심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시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 〰〰〰〰〰〰〰〰 조성사업” 등 3건을 추진하였다.

[표 1] 공사현황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제2절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시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부서의 설계변경 심사를 받도록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시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 〰〰〰〰 〰〰〰〰〰〰〰〰

1)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 조성사업” 등 3건을 추진하면서 공사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20억 원(▶▶시 계약심사 대상의 경우 5억 원) 이상으로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의 적절성 및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후 심사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 ♣♣♣♣♣♣ 조성사업**

그런데도 ▣▣▣▣▣▣▣▣▣▣에서는 “▶▶ ♣♣♣♣♣♣ 조성사업” 을 추진하면서 다음 [표 2]와 같이 설계변경 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이 발생하는 2회 설계변경(누적금액 \$ \$ \$, \$ \$ \$천 원 증, 20.92%)에 대한 설계변경 심사를 받은 후 변경계약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누적 설계변경 금액 \$ \$ \$, \$ \$ \$천 원(20.87%)이 증가한 4회 설계변경 시에 설계변경 심사(♠♠♠♠♠♠♠♠-☆☆☆☆☆☆호, ☆☆☆☆. ☆☆. ☆.)를 받은 후 설계변경 계약을 추진하는 등 계약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설계변경 내역 “생략”

**2. ♣♣♣♣♣♣♣♣♣♣♣♣ 조성사업 건축공사**

그리고 ▣▣▣▣▣▣▣▣▣▣에서는 “♣♣♣♣♣♣♣♣♣♣♣♣ 조성사업 건축공사” 를 추진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설계변경 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이 발생하는 2회 설계변경(누적금액 \$ \$ \$, \$ \$ \$천 원 증, 10.29%)에 대하여 ☆☆☆☆. ☆☆. ☆. 설계변경 심사(▶▶시 ▣▣▣▣▣▣▣▣▣▣-☆☆☆☆☆☆호)를 득한 후 설계변경 계약을 추진하였음에도 화강석바다 마감물량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 \$ \$ \$천 원(누적금액 \$ \$ \$, \$ \$ \$천 원, 10.84%)이 증액되는 3회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심사 없이 변경 계약을 추진하는 등 계약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설계변경 내역 “생략”

**3. ♣♣♣♣♣♣♣♣♣♣♣♣ 이전신축 건축공사**

또한 ▣▣▣▣▣▣▣▣▣▣에서는 “♣♣♣♣♣♣♣♣♣♣♣♣ 이전신축 건축공사” 를 추진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설계변경 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이 발생하는 1회 설계변경(누적금액 \$ \$ \$, \$ \$ \$천 원, 17.74%)에 대하여 ☆☆☆☆. ☆. ☆☆. 설계변경 심사(▶▶시 ▣▣▣▣▣▣▣▣▣▣-☆☆☆☆☆☆호)를 득한 후 설계변경 계약을 추진하였음에도 내부 싱크대 설치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 \$ \$ \$천 원(누적 금액 \$ \$ \$, \$ \$ \$천 원, 17.97%)이 증액되는 2회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심사 없이 변경 계약을 추진하는 등 계약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4] 설계변경 내역 “생략”

그 결과 계약금액 산정의 합리성과 원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없어 예산 집행의 타당성이 저해되고 그로 인하여 행정적·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BBB, CCC, DDD는 주의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